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4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조례의 내용 중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**조례안 제7조제3항 수정**

-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사유별 반환규정 신설

○ **조례안 제9조 및 제14조 후단 삭제**

- 법률의 규정 없는 자치단체의 면책규정 삭제

○ **조례안 제19조 삭제**

-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

- 제출의견 반영(안 제7조) : 사용료 외 수강료 추가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의 “사용료”를 “사용료 및 수강료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1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2. 사용 및 수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
3.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제3항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사용 및 수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.

제9조 본문의 후단을 삭제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있으며,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용료 및 수강료) ①(생략)	제7조(사용료 및 수강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「평창군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 한다.	② 사용료 및 수강료의 ----------.
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	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1.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	1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2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	2. 사용 및 수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
<신 설>	3.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
<신 설>	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제3항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사용 및 수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.

제9조(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·정지 또는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제9조(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) 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위탁의 취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.	제14조(위탁의 취소) ① ----------있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령 등을 준용한다.	<삭 제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